- 2020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 척 시

(기획감사실)

2020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내역	금액(원)	
계			26건	주의 6 시정 20		9,335,850	
1	◆	2020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314,000	
2	◆	2020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	징수	124,500	
3	◆	2018~ 2020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및 징구	주의			
4	◆	2020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시정			
5	◆	2020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환급	7,000	
6	◆	2019~ 2020	인감증명발급대장 작성 누락	주의			
7	◆	2020	직원 생일축하 격려금 지급 소홀	시정	추급	660,000	
8	◆	2018~ 2019	건설공사 정산변경 부적정	시정	감액	487,000	
9	◆	2019~ 20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2,714,000	
10	◆	2018~ 2020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	시정			
11	◈	2020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171,000	
12	◈	2020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3	◈	2018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환급	8,000	
14	◈	2019~ 2020	지시사항 추진실적 관리 소홀	시정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내역	금액(원)	
15	◈	2019~ 20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1,822,000	
16	◈	2018~ 2020	신용카드 연체 등 계좌관리 부적정	시정	추징	140,350	
17	◈	2019	수입인지 미소화	시정	추징	20,000	
18	◈	2019~ 202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9	●	2019~ 2020	건설공사 과다 설계	시정	감액	1,017,000	
20	●	2018~ 2019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1	●	2019	주민등록 과태료 과소 부과	시정	징수	20,000	
22	●	2018~ 2020	지시사항 추진실적 관리 소홀	시정			
23	●	2019~ 202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24	●	2019~ 2020	수입인지 미소화	시정	추징	80,000	
25	●	2019~ 2020	건설공사 정산변경 등 부적정	시정	감액	1,738,000	
26	●	2019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회수	13,000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314,000원

【제 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시공회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 예정액	과다 계상액	과다계상내역
◆ 도로 및 석축 정비공사 [****(주) ***]	'20.**.**	'20.**.** ~'20.**.** (중지일 '20.**.**)	**,***	314	뒷채움잡석 설치 시 다짐장비 추가하여 공사비 과다계상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 및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사용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공사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20.**.**. ◇과 계약 체결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4차)』 성과 결과에 의거 발주한 **'◆ 도로 및 석축 정비공사'**에 대하여 석축찰쌓기 단가 산출 시 뒷채움잡석 설치는 인력 및 굴삭기 조합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다짐장비(물탱크 및 진동로울러)를 추가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 **314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설계 시 과다 계상된 314,000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징수 124,500원

【제 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주민세 과세 누락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납세자	과세물건	건수	과세면적	과세표준	금 액	비고
계		1	1	1			124,500	
주민세 (재산분)	2020	㈜	◆ *** ***-*	1	498㎡	250	124,500	

※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별도 산출

2. 내 용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사업소(1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1건 124,5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누락한 주민세(재산분) 124,500원 및 가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8 ~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및 징구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불필요한 서류 요구 현황

구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계	55	8	1
2018년	8	1	1
2019년	30	5	–
2020년	17	2	–

2. 내 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하고, 각호 2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호 1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또한, 민원인이 기초생활보장(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망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동의함)에 체크 하여 서명하였다.

그런데, ◆에서는 기초생활보장(맞춤형) 복지급여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사용하거나 문서로 관련부서에 교부신청을 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 55건, 혼인관계증명서 8건, 제적등본 1건을 민원인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해당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가설건축물 관리소홀(존치기간 만료대상) 현황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용도	존치기간
1	2017-◆-가설건축물축조신고-**	2017.*.**	***	◆ *** **-*	창고	2020.7.17.
2	2017-◆-가설건축물축조신고-**	2017.*.**	***	◆ *** ***-*외1필지	어업용 간이시설	2020.7.18.
3	2017-◆-가설건축물축조신고-**	2017.*.*	***	◆ *** ***	창고	2020.8. 3.
4	2018-◆-가설건축물축조신고-**	2018.*.**	**** (주)	◆ *** *-*외1필지	현장 사무실	2020.7.19.

2. 내 용

「건축법」 제20조, 제79조, 제80조 등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

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기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야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될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의 가설건축물 4건에 대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20.9.15.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조사 후 원상복구(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이나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가설건축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4건의 건물에 대하여 기간연장 또는 원상복구(자진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7,000원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다 부과징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부과일자	부과사유 (지연기간)	부과금액(원)			비 고
				기준액	착오 부과액	정상 부과액	
계	2건				14,000	7,000	7,000원 과다부과
1	*** (**.**.**)	2020.**.**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7일 이내)	5,000	2,000	1,000	1,000원 과다부과 (감경률 오적용)
2	*** (**.**.**)	2020.**.**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3개월 이내)	30,000	12,000	6,000	6,000원 과다부과 (감경률 오적용)

2. 내 용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2개월 이상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는 시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2]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주민등록법」 감경대상자와 동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기간 내에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 감경대상자인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감경기준이 큰 주민등록법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의 4분의3까지 감경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2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개정된 주민등록법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의 4분의3

---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017.12.1. 개정

까지 감경하여 부과하여야 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100분의 50만 감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과다부과하고 미성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주민등록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 부과·징수한 주민등록 과태료 7,000원을 환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인감증명발급대장 작성 누락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인감증명 위임발급 시 발급대장 미작성 현황

발급일자	위임자	대리인	관계	발급통수	용도	발급대장
계	5건			5		
2019.**.**	***	***	직원	1	일반용	인적사항 미작성 (대리인 무인 누락)
2019.**.**	***	***	직원	1	일반용	
2019.**.**	***	***	직원	1	일반용	
2019.**.**	***	***	자	1	일반용	
2020.**.**	***	***	자	1	일반용	

2. 내 용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5건의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서 대리인이 발급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위임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발급대장 작성을 누락한 채 대리인의 무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감증명법」에 따라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작성 및 무인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감증명 발급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급 660,000원

【제 목】 **직원 생일축하 격려금 지급 소홀**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2020년 직원 생일축하 격려금(상품권) 지급 현황

부서	총 인원	지급자	미지급자	생일 미도래자	제외대상		
					전출	전입	비대상
◆	53명	8명	**22명**	8명	6명	6명	3명

※ 세부내역 붙임참조

2. 내 용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격려품 제공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무과에서는 2018년부터 직원 생일축하 격려금 지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또한 「2020년 직원 생일 격려 추진 알림」[3]을 시행하여 부서 소속 직원[4]을 대상으로 매월 초 1인당 30,000원의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안내한 바 있고, 사업소 및 읍면동은 자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변동발생 시 생일이 해당되는 달 소속부서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생일이 도래한 소속 부서 직원에게 생일축하 격려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면서 2월에서 4월까지 8명에게만 생일축하 격려금을 지급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생일이 지났음에도 미지급자가 22명 발생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생일축하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2명에게 즉시 생일축하 격려금(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시고,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후생복지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총무과-1334(2020.1.15.)호

4) 지급대상 : 부서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
제외자 : 파견·휴직·기간제(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포함)·실무수습 직원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487,000원

【제 목】 건설공사 정산변경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시공회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과다계상내역
계	2건			487	
◆ 해변 데크 정비공사 [(주)****]	'18.**.**	'18.**.** ~'18.**.**	**,***	242	이윤과다적용 (이윤율 변경)
◆ 상수도 급수관로 연장공사 [****(주)]	'19.**.**	'19.**.** ~'19.**.**	**,***	245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8절 및 제13장제7절에 의하면,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공사도급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고,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정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윤율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이윤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의하면,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정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9.**.**일 ○과 계약체결 시공한 「◆ 상수도 급수관로 연장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건강보험료 344,000원, 연금보험료 479,25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274원, 안전보건관리비 586,207원(이윤율 13.49%)을 적용하여 정산변경을 하여야 하나, 건강보험료 333,928원, 연금보험료 465,22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8,417원, 안전보건관리비 500,676원(이윤율 14.30%)을 적용하였고, 2018.**.**.일 ⓘ과 계약체결 시공한 「◆ 해변 데크 정비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안전보건관리비 956,372원(이윤율 14.01%)을 적용하여 정산변경을 하여야 하나 829,285원(이윤율 14.53%)을 적용하여 **총 2건 487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정산 시 이윤율 변경으로 과다 집행한 487,000원에 대해 감액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714,000원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출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미정산 금액	정산 불가품목
계	계	6건			2,714	
1	2019.**.**	◆ 농로확장 및 보수공사	****(주)	**,***	243	라바콘, 교통안전간판
2	2019.**.**	◆ 농로 및 석축설치공사	****(주)	**,***	866	교통안전간판
3	2019.**.**	◆ 배수로 및 석축설치공사	㈜**	**,***	125	라바콘
4	2019.**.**	◆ 해안 침식방지 시설공사	****(주)	**,***	1,078	라바콘, 교통안전간판
5	2020.**.**	◆ 보도 정비공사	****(주)	**,***	256	라바콘, 교통안전간판
6	2020.**.**	◆ 석축설치 및 포장공사	****(주)	**,***	146	라바콘, 교통안전간판

2.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7조 및 제8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보면 안전시설비의 경우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5] 등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농로확장 및 보수공사' 등 6건 284,808천원의 건설공사를 준공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증빙서류, 사용기준 등을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공사차량외 교통안전을 위한

5)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등)

사업장 표시목적의 공사현장 안전간판, 라바콘 등의 구입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정산 없이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여 총 2,714천원의 공사금액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과다 정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14,000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8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현황

구분	연도별 기준일	통장잔액 (원)	전년도 대비 증감액	증감율 (%)	비고
◆ 세입세출외현금	2017.12.31	*,***,***	*,***,***	99.8	
	2018.12.31	**,***,***	*,***,***	69.2	
	2019.12.31	**,***,***	*,***,***	32.2	
	2020.09.14. (감사일 현재)	**,***,***	*,***,***	21.1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75조 및 제76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

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77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수납등록을 하여야 하며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보관금 등은 보관사유 종료 즉시 해당자에게 반환 조치하여 불필요하게 잔액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 납입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수납등록을 하지 않아 계좌 잔액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상 잔액을 상이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보관금 등을 보관사유 종료 시 즉시 정리하지 않아 매년 계좌 잔액이 증가하여 2020.9.14. 감사일 현재 계좌 잔액이 **,***천원에 이르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 중인 보관금 잔액 **,***천원에 대해 미처리 사유를 확인하여 즉시 반환, 세입조치 등 정리를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관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71,000원

【제 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시공회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 예정액	과다 계상액	과다계상내역
◈ 주변 석축 설치공사 [****(주) ***]	'20.**.**	'20.**.** ~'20.**.**	**,***	171	석축찰쌓기 단가 산출시 줄눈메꿈몰탈 시공비 추가하여 공사비 과다계상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 및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공사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20.**.**. ◨과 계약 체결한 『2020년 ◈ 주민숙원사업 설계용역(4차)』 성과 결과에 의거 발주한 **'◈ 주변 석축 설치공사'**에 대하여 석축찰쌓기 단가 산출 시 줄눈메꿈몰탈 작업은 석축찰쌓기 공정에 포함되어 있어, 줄눈메꿈몰탈 시공비는 제외하고 자재비만 포함하여야 하나, 줄눈메꿈몰탈 시공비를 추가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 **171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설계 시 과다 계상된 171,000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인감증명 위임발급 시 대리인 무인 누락 현황

발급일자	위임자	대리인	관계	발급통수	용도	발급대장
2020.**.**	***	***	직원	1	자동차매도용	대리인 무인 누락

2. 내 용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1건의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서 대리인이 발급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대리인의 무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감증명법」에 따라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감증명 발급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8,000원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다 부과징수 현황

성명 (생년월일)	부과일자	부과사유 (지연기간)	부과금액(원)			비 고
			기준액	착오 부과액	정상 부과액	
*** (**.**.**)	2018.**.**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6개월 미만)	40,000	16,000	8,000	8,000원 과다부과 (감경률 오적용)

2. 내 용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2개월 이상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는 시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7]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주민등록법」 감경대상자와 동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기간 내에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 감경대상자인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감경기준이 큰 주민등록법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의 4분의3까지 감경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1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개정된 주민등록법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의 4분의3까지 감경하여 부과하여야 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100분의 50만 감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과다부과하고 미성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주민등록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2017.12.1. 개정

【처 분 요 구】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 부과·징수한 주민등록 과태료 8,000원을 환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지시사항 추진실적 관리 소홀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지시사항 추진실적 및 관리 현황

연번	지시권자	관리번호	지시일자	지시제목	추진부서	새올시스템상 실적관리현황			비고
						추진사항	추진계획 수립여부	담당부서 추진사항	
계				5건		완료 4 미완료 1			
1	시장	2019-시장-**	2019.**.**	◎	읍면동	추진완료	미수립	미착수	담당자 미입력
2	시장	2019-시장-**	2019.**.**	◎	읍면동	추진완료	미수립	미착수	담당자 미입력
3	시장	2019-시장-***	2019.**.**	◎	읍면동	추진완료	미수립	미착수	담당자 미입력
4	시장	2020-시장-**	2020.**.**	◎	읍면동	추진완료	미수립	미착수	담당자 미입력
5	시장	2020-시장-**	2020.**.**	◎	재난안전과 건설과 읍면동	미착수	미수립	미착수	담당자 미입력

2. 내 용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간부회의 「시장 지시사항」을 전부서에 통보하면서 지시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부서장은 지시사항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비롯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시사항 추진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지시사항 추진체계

수 명		처리부서 지정·통보		지시사항 처리		지휘부 보고
주·월간업무보고 및 간부회의	▶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	현장확인,검토, 계획수립·시행 등	▶	처리방침 결정, 계획·추진상황·결과 등
총무과		총무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하달된 지시사항 4건에 대해서 실제 추진을 완료하였음에도 새올시스템에 추진계획 및 실적, 담당자 등을 입력하지 않아 미착수 상태로 방치하고, 1건은 지시사항이 하달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착수조차 하지 않는 등 시장 지시사항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처 분 요 구】

○ 새올시스템에 미입력한 지시사항 추진실적 등을 즉시 입력하도록 조치하시고,

○ 지시사항 하달 시 담당자 지정, 추진계획 수립 등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가지 이행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822,000원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출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미정산 금액	정산 부적정 내역
계	계	3건			1,822	
1	2019.**.**	◈ 대기실 신축공사(건축)	****(주)	**,***	768	PE휀스, 안전간판 이윤율 조정
2	2020.**.**	◈ 석축 및 배수로 정비공사	******(주)	**,***	512	안전화, 안전모 동일사진 제출
3	2020.**.**	◈ 석축 및 기초세굴 보강공사	****(주)	**,***	542	

2.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7조 및 제8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보면 안전시설비의 경우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8] 등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절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윤율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이윤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대기실 신축공사(건축)’ 등 3건

8)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등)

80,027천원의 건설공사를 준공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증빙서류, 사용기준 등을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공사현장 경계용 안전휀스 및 안전간판의 구입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2개의 공사장에서 근로자에게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동일한 안전화, 안전모 사진을 제출하였는데도 추가 증빙자료 요구 없이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였고,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된 산출내역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99,806원(이윤율 8.679%)을 조정없이 적용하여야 하나 883,537원(이윤율 9.192%)으로 적용하였으며, 또한 2019.12.30.일 보험료등 변경(정산)계약 체결 시 이윤율을 착공내역서상의 이윤율보다 높은 9.821%를 적용하여 총 **1,822천원**의 공사금액을 부적정하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의거 과다 정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22,000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8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40,350원

【제 목】 신용카드 연체 등 계좌관리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가. 신용카드 계좌 연체료 발생 현황

(단위 : 원)

연번	신용카드사 청구내역			신용카드 결제계좌 출금내역		
	청구월	출금일	청구금액	거래일자	출금액	연체료
계	3건		234,330		234,354	24
1	2019.7월	2019.07.22	73,480	소계	73,485	5
				2019.07.22	61,030	
				2019.07.23	12,455	
2	2019.10월	2019.10.22	89,360	소계	89,375	15
				2019.10.22	71,455	
				2019.10.25	17,920	
3	2019.11월	2019.11.07	71,490	소계	71,494	4
				2019.11.07	60,220	
				2019.11.08	11,274	

나. 신용카드 계좌 입출금 내역 잔액 현황 (기준일 : 2020.8.31.)

(단위 : 원)

연번	입금일자	수입금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미지출액	집행 누락액	통장잔액 (2020.8.31.) 차액	사유
계			1,751,770	1,381,210	571,450	200,890	359,710 10,850	
1	2018.12.18	*** 시상금	200,000	-	200,000			처리지연
2	2019.03.11	전기요금	1,114,450	1,114,450 (2019.01.31.)	-			1월 전기요금 사후입금
3	2019.04.22	4월 유류카드 대금	65,870	195,370	-	129,500		집행누락 (추징)
4	2020.01.30	장기요양 환급금	23,720	-	23,720			처리지연
5	2020.01.30	건강보험 환급금	279,420	-	279,420			처리지연
6	2020.02.20	2월 유선방송료	-	21,780	-	21,780		집행누락
7	2020.04.24	실업보험급여	68,310	-	68,310			처리지연
8	2020.08.24	8월 유류카드 대금	-	49,610	-	49,610		집행누락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대금 결제일 전에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이용대금을 입금하여 카드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카드대금 입금처리 지연으로 3건 24원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하였고, 신용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과 상관없는 수입금 4건 571,450원에 대해서는 즉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납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2020.9.24.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 없이 그대로 신용카드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3건 200,890원에 대해 예산집행을 누락하고 통장잔액 359,710원과 미지출액 571,740원 간에 10,850원 차액이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2019년 집행누락액 129,500원 및 계좌 잔액 불일치 차액 10,850원 등 총 140,350원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반납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추진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0,000원

【제 목】 수입인지 미소화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2019.**.**	◈ 냉난방기 설치공사	****.**	**,***,***	2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냉난방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 납부대상임에도 1건 20,000원의 인지세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20,000원을 소화하고 소인처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연번	지급일	집행내용	수량	내역	금액(원)	지출과목	적 정 지출과목
	계	3건			1,119,500		
1	2019.**.**	설명절 직원 격려품 구입	**명	**,***원	311,40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	2019.**.**	추석명절 직원 격려품 구입	**명	**,***원	448,000		
3	2020.**.**	설명절 직원 격려품 구입	**명	**,***원	360,100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소속 상근 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의 직무활동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 배포한 해설집에 따르면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2018년부터 후생복지사업의 하나로 직원 생일축하 격려금 지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또한 「2020년 직원 생일 격려 추진 알림」[9]을 시행하여 부서 소속 직원[10]을 대상으로 매월 초 1인당 30,000원의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안내한 바 있고, 사업소 및 읍면동은 자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변동발생 시 생일이 해당되는 달 소속부서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설 및 추석 명절에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의례적인 선물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구입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을 소진하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직원 생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9) 총무과-1334(2020.1.15.)호
10) 지급대상 : 부서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
제외자 : 파견·휴직·기간제(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포함)·실무수습 직원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017,000원

【제 목】 건설공사 과다 설계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시공회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 예정액	과다 계상액	과다계상내역
계 - 2건				1,017	
● 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공사 [****(주)]	'19.**.**	'19.**.** ~ **.**	**,***	147	관급자재 레미콘 미정산
● 재해복구사업 [(주)**]	'20.**.**	'20.**.** ~ **.**	**,***	870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산출 오류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

유지·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건설공사를 설계변경 할 경우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공사설계가 되도록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9.**.**. ◩과 계약 시공한 **「● 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2019.**.**.일자 설계변경 시 면벽(2.0m*2.0m*20t) 2개소 미시공에 따른 레미콘(25-21-120) 1.2㎥를 감하여 관급자재 레미콘 수량을 조정(당초 19㎥→변경 17㎥)하여야 하나 조정없이 당초 계약수량인 19㎥를 반영하여 **147천원**(2㎥*73,590원)을 과다 집행하였고, 2020.**.**. ◫과 계약 시공한 **「● 재해복구사업」** 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P.P마대쌓기) 산출 시 계산오류로 과다적용되었고, 신규단가(사토운반) 산출 시 현장 내 설치하지 않은 세륜기의 운반차량 통과시간을 추가 반영하여 **870천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총 1,017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설계 시 과다 계상된 1,017,000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인감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현황

발급일자	위임자	대리인	관계	발급통수	용도	발급대장
계	3건					
2018.**.**	***	***	배우자	1	일반용	도장 날인
2019.**.**	***	***	배우자	4	일반용	대리인 무인 누락
2019.**.**	***	***	배우자	1	일반용	

2. 내 용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3건의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서 대리인이 발급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무인 대신 도장을 날인하거나 대리인의 무인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감증명법」에 따라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무인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감증명 발급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징수 20,000원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과소 부과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소부과 현황

성명 (생년월일)	부과일자 11)	부과사유 (지연기간)	부과금액(원)			감경 사유12)	부과당시 나이
			기준액	착오 부과액	정상 부과액		
*** (**.**.**)	2019.**.**	주민등록증발급신청지연 (6개월 이상)	50,000	20,000	40,000	미성년자 자진납부	만 21세 13)

2. 내 용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2개월 이상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1) 발급 통보일자 : 2015.3월(관외거주자로 일자 확인 불가), 발급기간 : 2015.4.1.~2016.3.31.(1년간)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1/2경감), 자진납부(20%경감)
13)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을 미성년자라 함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는 시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15]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주민등록법」 감경대상자와 동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당시 만 21세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미성년자에 따른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정당액보다 20,000원 과소 부과하였으며, 감경 규정 또한 개정된 주민등록법 규정이 아닌 감경 범위가 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 등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1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2017.12.1. 개정

【처 분 요 구】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소 부과한 주민등록 과태료 20,000원을 징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8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지시사항 추진실적 관리 소홀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지시사항 추진실적 및 관리 현황

연번	지시권자	관리번호	지시일자	지시제목	추진부서	새올시스템상 실적관리현황			비고
						추진사항	추진계획 수립여부	담당부서 추진사항	
계				7건		완료 5 미완료 2			
1	시장	2018-시장-***	2018.**.**	▶	전부서	추진완료	미수립	미착수	담당자 미입력
2	시장	2018-시장-***	2018.**.**	▶	전부서	추진완료	미수립	미착수	담당자 미입력
3	시장	2019-시장-**	2019.**.**	▶	읍면동	추진완료	미수립	미착수	담당자 미입력
4	시장	2019-시장-**	2019.**.**	▶	읍면동	추진완료	미수립	미착수	담당자 미입력
5	시장	2019-시장-***	2019.**.**	▶	읍면동	추진완료	미수립	미착수	담당자 미입력
6	시장	2020-시장-**	2020.**.**	▶	재난안전과 건설과 읍면동	미착수	미수립	미착수	담당자 미입력
7	시장	2020-시장-***	2020.**.**	▶	읍면동	미착수	미수립	미착수	담당자 미입력

2. 내 용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간부회의 「시장 지시사항」을 전부서에 통보하면서 지시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부서장은 지시사항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비롯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시사항 추진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지시사항 추진체계

수 명		처리부서 지정·통보		지시사항 처리		지휘부 보고
주·월간업무보고 및 간부회의	▶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	현장확인,검토, 계획수립·시행 등	▶	처리방침 결정, 계획·추진상황·결과 등
총무과		총무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하달된 지시사항 5건에 대해서 실제 추진을 완료하였음에도 새올시스템에 추진계획 및 실적, 담당자 등을 입력하지 않아 미착수 상태로 방치하고, 2건은 지시사항이 하달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착수조차 하지 않는 등 시장 지시사항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처 분 요 구】

○ 새올시스템에 미입력한 지시사항 추진실적 등을 즉시 입력하도록 조치하시고,

○ 지시사항 하달 시 담당자 지정, 추진계획 수립 등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가지 이행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지급일	집행내용	지급대상	단가	금액(원)	지출과목	적 정 지출과목
2019.**.**	꽃다발 구입	퇴직자 2명 (명단 누락)	**,***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연번	지급일	집행내용	지급대상	단가	금액(원)	비고
계		2건				
1	2019.**.**	기관단체장 추석맞이 기념품 지출	****** 등 6명	**,***	***,***	직무활동 범위 미해당 명단 누락
2	2020.**.**	설 명절 맞이 기관단체장 기념품 구입	****** 등 8명	**,***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직무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해설집에 따르면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격려 목적으로 꽃다발을 구입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품의서에 지급대상자도 명시하지 않아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세출예산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무활동 범위 위반 집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해설집에 따르면 직무활동 범위 중 업무추진 유관

기관 협조와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16]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명절을 맞아 단순 격려 목적으로 관내 사회단체장들에게 부적정하게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품의서에 구체적 지급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아 실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집행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일련번호 : 2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80,000원

【제 목】 수입인지 미소화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연번	계약일자	계약명	도급업체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계	4건				80,000
1	2019.**.**	** 외벽 및 부속건물 도색공사	****	**,***,***	20,000
2	2019.**.**	● 관내 경로당 보수공사	****	**,***,***	20,000
3	2020.**.**	● 경로당 보수공사	****	**,***,***	20,000
4	2020.**.**	● 마을안길 배수로덮개 설치공사	****	**,***,***	20,000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외벽 및 부속건물 도색공사' 등 4건 51,904천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납부 대상임에도 총 80,000원의 인지세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80,000원을 소화하고 소인처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738,000원

【제 목】 건설공사 정산변경 등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가. 건설공사 이윤 과다적용 현황

공사명 (시공회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액 (천원)	과다 계상액	과다계상내역
● 정비공사 [(주)****]	'19.**.**	'19.**.** ~**.**	**,***	75	이윤과다적용 (이윤율 변경)

나. 보험료 등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연번	지출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천원)	정산 구분	미정산 금액	정산 부적정 내역
계		4건		0		1,663	
1	2020.**.**	● 재해복구사업	(합)****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06	교통통제 관련 인건비·시설비
2	2020.**.**	● 배수로 덮개 설치공사	****(주)	**,***	고용산재	22	가입증빙 없음
3	2020.**.**	● 오수관 개선공사	**** ***	*,***	고용산재	142	
4	2020.**.**	● 쉼터데크 설치공사	**** ***	*,***	고용산재	293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건설공사 정산변경 시 이윤 과다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제7절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윤율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이윤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9.**.**. ▨과 계약체결 시공한 「● 정비공사」에 대하여 2019.**.**. 보험료 정산에 따른 변경(정산) 계약시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이윤율인 13.06445%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나 이윤율 13.9511%을 적용하여 **75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나. 보험료 등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7조 및 제8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보면 안전시설비의 경우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17] 등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개별법령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등)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재해복구사업' 1건의 건설공사를 준공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보호목적과 상관 없는 공사현장 교통통제 목적으로 사용한 신호수 인건비, 안전간판 및 라바콘 구입내역을 감액처리 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으며, '● 마을안길 배수로 덮개 설치공사' 등 3건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에도 증빙서류 확인 없이 보험료를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총 1,663천원의 준공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과다 정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 1,738,000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 행 년 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3,0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 · 부당내용】

1. 현 황

○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후반기 ****** **** 담당직원 교육	***	2019.**.**. 13:00~18:00	**	44,000	31,000	13,000	식비 과다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제4조, 제15조, 제16조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경로[18]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19]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0,000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9년도 후반기 ▼ 담당직원 교육' 1건의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관외출장명령 시간이 13시부터 18시까지로 조식과 중식비는 출장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않고 식비를 전액 지급하여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한 출장여비 13,000원을 회수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19)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